

※ 시행: 2025년 12월 15일부터

치킨의 중량표시 매뉴얼

2025. 12.



식품의약품안전처

I | 개요

□ 추진 목적

- ▶ 소비자가 음식점을 이용할 때 식육의 가격과 중량을 알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에서 가격 및 중량표시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음
- ▶ 그간 소고기, 돼지고기 등 조리전 식육을 대상으로 운영해 왔으나 소비자 알권리 강화를 위해 치킨의 중량 정보를 확인하고,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중량 표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
- ▶ 특히, 최근 치킨 제품의 중량 감소 사례 등이 불거진 만큼 소비자가 즐겨 먹는 **10대 프랜차이즈 치킨업체를 우선 대상으로** 선정하고, 중량 표시 방법을 제시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함

□ 근거 규정

- 「식품위생법」 제44조(영업자 등의 준수사항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(식품접객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)

□ 제도 확대 취지

- 치킨의 중량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중량 변경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 목적

1. 표시 의무자

- 10대 브랜드 가맹본부 및 가맹점(일반음식점·휴게음식점·제과점영업)
 - BHC, BBQ, 교촌치킨, 처갓집양념치킨, 굽네치킨, 페리카나, 네네치킨, 멕시카나, 지코바양념치킨, 호식이두마리치킨
- ※ 출처: 공정거래위원회 제공, 가맹점 순(2023년도 기준)

< 식품 분야 용량꿈수 대응방안('25.12.2. 물가관계장관회의) >

- ★ 모든 치킨전문점이 아니라, 10대 치킨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(약 12,560개사)에게만 부과. 대규모 가맹본부들이 다른 가맹본부에 비해 가맹점들의 의무 준수를 더 잘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

2. 표시대상/단위

- (표시대상) 닭고기로 만든 “치킨” 메뉴는 모두 대상임

※ 표시 대상 치킨의 정의(범위)

- 닭고기를 조각내거나 통째로 기름에 튀기는 등 열처리(굽기 등 포함)하거나, 이에 각종 양념을 가한 식품

- (표시단위) 치킨의 “메뉴별”로 표시, 일괄 표시 가능

- 다양한 세트 메뉴 중 치킨 메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표시 대상

※ 일괄 표시하는 경우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장소, 글자 크기로 표시

3. 표시방법(원칙)

- 메뉴별 사용하는 원료육(조리전 중량) 기준으로(①, ② 중 선택 표시)
 - ① 최소 중량을 000그램으로 표시하거나,
 - ② 닭고기는 통상 1마리(호) 단위로 유통되는 점을 감안하여, 중량(호) 범위인 000그램~000그램으로 표시
 - ※ 절단육, 지방 등을 제거한 전처리육으로 치킨을 조리하는 경우 절단육·전처리육에 사용한 닭고기의 호수(중량)로 표시할 수 있음
- 부분육(다리, 날개, 봉 등)은 최소 중량 000그램으로 표시 단, 그램으로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'개수(조각)' 단위 표시 가능

(참고)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일부 양념된 원료육(염지육)을 공급하는 경우는 염지육의 중량을 상기원칙에 따라 표시 가능

※ (주의사항) 이 경우에도 20% 이상 차이가 나면 안 됨

4. 표시장소

- (매장 내) 식품위생법에 따라 이미 가격표(메뉴판)에 가격을 표시 하도록 하고 있어, 가격 주변에 “중량” 표시(원칙) 단, 메뉴 구성 등이 복잡하여 표시가 어려운 경우 일괄 표시도 가능
- (배달앱 이용) 소비자가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배달앱 내 매장별 가게정보, 메뉴정보 등에 “중량” 표시(원칙)
- (홈페이지)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내 메뉴명 및 가격 주변에 중량 표시(원칙). 단, 일괄 표시도 가능
 - ※ 절단육이나 지방 등을 제거한 전처리육을 사용하여 중량이 감소된 경우 '중량이 상이할 수 있다'는 등의 문구 추가 가능
- (배달앱을 이용하지 않은 고객 배달 시) 가급적 배달용 포장박스 주변에 인쇄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여 표시하거나, 영수증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(권고)

5. 표시 시행 시기

- '25. 12. 15. 부터 즉시 시행하되, '26. 6. 30까지 계도기간 운영
 - 위반시 처분하지 않고 올바른 표시방법 지도 등 안내
- '26. 7. 1. 부터 중량표시 미표시하는 경우 '시정명령' 등 처분



Q1 법령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?

- ◆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[별표 17]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의 규정에 따라
 -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도록 하고 있고
 - 또한, 불고기, 갈비 등 식육의 가격은 100그램당 가격(조리식품의 경우 조리전 중량)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- ◆ 따라서, 닭고기도 식육*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 중량표시 대상으로 해당 규정 시행 초기에는 생고기(소고기, 돼지고기 등)를 구워먹는 경우에 한정하여 운영하였으나,
 - * 「축산물위생관리법」에서 규정하는 소, 말, 양, 돼지, 닭, 오리 등이 해당
- ◆ 닭고기 중 치킨도 중량표시 대상으로 유권해석 시행하는 것임

※ 음식점 가격·중량표시제 규정

구분	대상
가격 표시 (메뉴별 가격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모든 식품접객업소
중량 표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식육(소고기, 돼지고기, 닭고기 등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00그램당 가격과 함께 1인분의 가격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예와 같이 1인분의 중량과 가격을 함께 표시 예) 불고기 100그램 ○○원(1인분 120그램 △△원) 갈비 100그램 ○○원(1인분 150그램 △△원) • 치킨 <‘25.12.15.~ 추가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메뉴별 조리예 사용되는 원료육(조리전) 중량 표시

Q2

왜 10대 치킨가맹본부와 그 소속 가맹점만 정했는지?

- ◆ 2023년 기준(공정위 자료)으로 10대 치킨가맹본부에 소속된 가맹점이 전체 프랜차이즈 치킨가맹점의 32%(12,560개소/39,789개소)에 해당하고,
 - 소규모 가맹본부의 경우 메뉴판 등 교체비 비용이 발생하고 치킨음식점이 대부분 소상공인점을 고려하였음

※ '25.12.2. 물가관계장관회의 협의 결과

Q3

왜 족발이나 삼계탕은 하지 않고 치킨만 해야 되는지?

- ◆ 모든 식육의 생고기와 그 식육으로 조리한 조리식품 모두 법령상 대상이 될 수 있으나(질의 1 참고), 최근의 중량감축 사례 등을 통한 소비자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치킨 분야를 우선 시행하는 것임
- ◆ 치킨 중량표시제 운영 이후 제도 정착 상황을 지켜보고 소비자 요구 등을 고려하여 다른 조리식품의 추가 여부는 검토 예정

Q4

본사에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데 왜 가맹점도 하나요?

- ◆ 소비자는 배달앱이나, 매장에서 메뉴를 확인함
 - 따라서 가맹점의 매장이 우선이며, 배달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배달앱에 표시하는 것임

Q5

치킨의 메뉴가 매우 다양한데 표시대상 메뉴는?

◆ 닭고기로 만든 모든 치킨 메뉴는 중량표시 대상이 기본 원칙이며,

- 우선 시행하는 10개 브랜드의 메뉴가 상당히 다양하여

10대 가맹사업본부와 사전 협의를 통해

메뉴별 대상을 세부적으로 논의할 예정임

* 후라이드 치킨, 양념치킨, 닭강정, 순살치킨, 왕·봉 등

** 대상 가맹사업본부 홈페이지 조사결과 약 297개 메뉴 판매 중(25.12.2.기준)

Q6

부분육을 사이드 메뉴로 제공하는 경우도 표시 대상인가?

◆ 사이드 메뉴로 제공하는 일부 부분육 제품(닭다리, 닭날개 등)도 표시 대상임

- 단, 튀김 옷 등으로 가공되어 납품되는 치킨너겟, 콜팝 등의 경우에는 중량 표시 제외 가능함

◆ 우선 시행하는 10개 브랜드의 메뉴가 상당히 다양하여 10대 가맹본부와 사전 협의를 통해 메뉴별 표시 대상을 논의할 예정임

Q7

치킨에 사용하는 원료육의 호만 표시해도 되나요

◆ 호수와 그에 따른 법정 그램 범위까지 표시해야 함

- 일반 소비자들은 호 단위 및 그에 따른 그램 수를 알 수 없으므로 범위를 병기하여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함

Q8

닭고기 호수(중량)가 변경되면 변경사항을 표시해야 하나요?

◆ 현재 접객업소에서 식육(닭고기)의 중량이 바뀌면
바뀐 부분에 대한 고지할 의무는 없지만,

- 바뀐 중량을 매장 내, 본사 홈페이지, 배달앱 등에
즉시 변경 표시하여야 함

◆ 표시된 중량과 다른 중량을 제공하는 경우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

Q9

'25.12.15부터 바로 메뉴판을 다 교체해야 하는 건가요?

◆ '25. 12. 15. 부터, 중량 표시가 바로 시행되나,

- '26. 6. 30. 까지는 처분이 적용되지 않으니, 본사 지침에 따라
운영하시기 바람

◆ 다만, 최근 프랜차이즈 치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니
가급적 신속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당부드림

◆ 반드시 메뉴판을 교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,
인쇄 등의 방법으로 스티커를 붙이거나 가격표에 그대로 기재하는
방법도 가능함(소비자에게 잘 보이도록만 하면 됨)

Q10

26년 식약처의 단속 및 처분 계획은?

- ◆ 자영업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'26. 6. 30.까지는
미표시로 인해 적발되는 경우 별도의 처분 없이
올바른 표시 방법으로 게시할 수 있도록 계도할 계획이고,
- 계도기간이 종료된 후 '26. 7. 1. 부터는
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, 영업정지(반복위반 시) 등 처분

참고1**처분 규정**

- 치킨의 중량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'시정명령' 처분

위반사항	1차위반	2차위반	3차위반
가격표에 중량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	시정명령	영업정지 7일	영업정지 15일

- 표시한 중량이 가격표에 표시된 내용과 다른 경우 합량에 따라 '영업정지', '시정명령' 등 처분

위반사항	1차위반	2차위반	3차위반	
중량 허위 표시	중량이 30% 이상 부족	영업정지 7일	영업정지 15일	영업정지 1개월
	중량이 20% 이상 30% 미만으로 부족	시정명령	영업정지 7일	영업정지 15일

- 음식물 중량을 광고하면서, 실 중량보다 과다하게 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광고*로 '시정명령' 처분

* 「식품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 제8조(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)

- 거짓·과장된 표시·광고/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·광고 등

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[별표 17]

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(제57조 관련)

7. 식품접객업자(위탁급식영업자는 제외한다)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

- 아.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(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것으로서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가격이 표시된 가격표를 말한다)를 붙이거나 게시하되,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영업소의 외부와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여야 하고,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.
- 터. 손님에게 조리하여 제공하는 식품의 주재료, 중량 등이 아목에 따른 가격표에 표시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.
- 퍼. 아목에 따른 가격표에는 불고기, 갈비 등 식육의 가격을 100그램당 가격으로 표시하여야 하며,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리하기 이전의 중량을 표시할 수 있다. 100그램당 가격과 함께 1인분의 가격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예와 같이 1인분의 중량과 가격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.
 - 예) 불고기 100그램 ○○원(1인분 120그램 △△원)
 - 갈비 100그램 ○○원(1인분 150그램 △△원)

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[별표 23]

행정처분 기준(제89조 관련)

위반사항	행정처분기준		
	1차위반	2차위반	3차위반
10.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			
가.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(별표 17 제7호자목·파목·머목 및 별도의 개별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)의 위반으로서			
8) 별표 17 제7호터목을 위반한 경우로서			
가) 주재료가 다른 경우	영업정지 7일	영업정지 15일	영업정지 1개월
나) 중량이 30퍼센트 이상 부족한 것	영업정지 7일	영업정지 15일	영업정지 1개월
다) 중량이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부족한 것	시정명령	영업정지 7일	영업정지 15일
16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5호까지를 제외한 법을 위반한 경우(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 사항과 별표 17 제7호자목·머목은 제외한다)	시정명령	영업정지 7일	영업정지 15일